보 상 규 정

제 정 : 1992. 7. 7
1차개정 : 1992. 9.25
2차개정 : 1993. 4.14
3차개정 : 1994.12. 9
4차개정 : 1995. 7.11
5차개정 : 1997. 3.10
6차개정 : 1999. 5. 1
7차개정 : 2000.10.30
8차개정 : 2001.12.31
9차개정 : 2004. 9.13
10차개정 : 2010. 3.26
11차개정 : 2010. 7. 6
12차개정 : 2012. 4. 2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무역보험법령, 정관, 업무방법서에 의한 무역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의 보상 및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원칙) 보상 및 보증채무이행과 구상권관리 및 채권관리에 관하여는 무역보험법령과 약관 및 구상권관리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사고조사 및 재산조사

제 3 조(사고조사의 실시) ①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계약자로부터 사고(위험)발생 통지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한다.
②수출자 또는 수출 기타 대외거래의 계약상대방이 파산, 법정관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고(위험)발생 통지가 없더라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4 조 (재산조사의 실시) 신용보증의 경우 사고(위험)발생통지서를 접수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사유를 인지하면 구상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사고조사의 구분) 사고조사는 국내조사와 국외조사로 구분한다.

제 6 조 (사고조사의 방법) ①국내조사는 서류조사 또는 출장조사 및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단, 구두에 의한 조사사항은 추후 서면자료를 보완한다.

②국외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국외사무소를 통한 조사
2. 재외공관,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, 기타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
3. D&B, ABC 등 외국의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조사
4. 직원에 의한 현지 출장조사

제 7 조(사고조사사항) 제6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(어음발행인, 신용보증의뢰인 및 보증계약자 포함) 및 수출 기타 대외거래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의 원인 및 사고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시 조사할 사항은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8 조(조사경비) ①제6조 제1항, 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제6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조사를 행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른다.

제 9 조(조사결과의 처리) 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.

1. 수출 기타 대외 거래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해외채권 추심기관 앞 추심의뢰필요성 여부판단 및 실행
2.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 지급에 따라 공사가 취득할 수 있는 채권(담보채권을 포함함)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
3. 기타 필요한 조치

제 3 장 보상 및 보증채무이행 심사

제 10 조(보험금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) ①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계약자로부터 보험금청구서(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)를 접수하면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적격 여부를 판정한다.

②보험금청구서 접수시 보험계약자로 부터 제출받는 서류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1 조(보상 및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심사) 사고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상심사(보증채무이행 심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)를 하며 보상심사사항은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2 조(회수 또는 지급의 의제) 보험계약자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인, 상계, 채무면제,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(수출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)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감소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. 다만,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3 조(신용장 불일치 사고건의 처리)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서류하자를 이유로 서류인수를 거절함으로써 발생된 사고의 경우 신용장조건 위반사유가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적 은행표준관행에 비추어 중요하지 아니한 사소한 하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보지 아니하거나 일부과실로 볼 수 있다.

제 14 조(보상적격판정) 보상심사후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상적격판정을 하도록 한다.

1. 보상
2. 보증채무이행
3. 면책
4. 구상(소구를 포함한다)

제 4 장 보상 및 보증채무이행

제 15 조(보험금지급 등) ①제14조에 의한 보상적격판정을 하게 되면 동 판정에 따른 이행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.

②보험금(대위변제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)은 보험계약자(보증계약자를 포함) 등이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.

③보험금 지급시 대위권 및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채권관련서류를 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권관련 징구서류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6 조(소구유예) 수출자가 소구에 응하게 되면 심각한 재무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등 소구유예가 필요한 경우, 수출자로부터 일정한 담보의 제공이 있으면 소구를 유예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7 조(보험금의 가지급 및 개산급보험금 지급) ①보험 및 보증사고건에 대한 사고조사 및 보상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일부를 가지급할 수 있으며 가지급 한도 및 사유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보험계약자의 개산급보험금 지급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개산급 지급사유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지급금 및 개산급보험금 지급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 18 조(비용의 보전) 보험계약자가 회수 및 약관상의 손실방지·경감의무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보전해 줄 수 있으며 보전 가능한 비용의 한도 및 종류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 장 채권보전 및 회수

제 19 조(채권보전조치)① 재산조사 결과 채무관계자의 소유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예상 구상실익가액, 환가의 용이성등을 검토하여 가압류, 가처분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채권보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지급전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채권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채권보전조치의 유보) 채무관계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 유보사유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1 조(채권보전조치의 해제) 채권보전조치후 신용보증부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거나 구상이 완료된 경우 또는 기존 채권보존조치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 해제사유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2 조(전매의 승인) ①손실경감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전매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를 승인할 수 있다.

②전매승인시 심사할 사항 및 전매방법 등에 대하여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3 조(가지급금 및 개산급보험금 반환) ①보험금의 가지급 및 개산급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보상적격판정의 결과 보상 또는 보증채무이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 및 개산급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이미 지급한 개산급보험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(보증계약자 포함)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한다.

제 24 조(연체이율 적용) 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약관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는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.

제 6 장 보 칙

제 25 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보상담당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6 조(서식의 제정 및 개폐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의 제정, 개폐는 보상담당 본부장에게 위임한다.

부 칙(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. 12. 9.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17조 및 제18조는 1994. 11. 4일자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적용한다.

부 칙(1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종전 규정 제17조(결제관행 등의 인정)는 1995년 4월 8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(2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. 3. 10.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. 5.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.11.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.1.2 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25조는 시행일 이전에 보험사고 또는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보상관련 처분 및 보험금 지급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부 칙(6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.9.13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25조는 시행일 이전에 보험사고 또는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보상관련 처분 및 보험금 지급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부 칙(7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8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관련규정의 폐지)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'국외보상요강'은 폐지한다.